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박유선**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IP 금융 활성화의 어려움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

III.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현황

- IP 담보 설정을 위한 법적 근거
- IP 가치평가 법제 현황
- IP 금융 모델 운용 현황

IV.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 IP 담보 설정을 위한 법적 근거
- 회계 처리의 현실화
- IP 가치평가 인프라 강화
- IP 금융 모델의 다양화
- 위험경감을 위한 제도 정비
-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V. 결론

* 본 논문은 2023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the IP Financial System”을 위한 연구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교수

초 록

지식재산(IP) 금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각 방면의 시장 성숙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우선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담보권 설정의 목적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의 변동을 외부에公示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회계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및 금융보고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IP 가치평가 기법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의 목적물인 지식재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IP 금융 모델을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는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IP 금융이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IP 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IP 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식재산(IP) 금융, 국제개발협력, IP 금융 인프라, IP 담보대출, IP 보증, IP 투자, IP 가치평가, IP 유동화

I. 서론

지식재산(IP) 금융은 지식재산과 금융의 결합어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활용하여 이를 매개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연구개발(R&D)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기술생태계의 전 과정에는 이를 금전적으로 뒷받침할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¹⁾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이나 설비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존의 금융 메커니즘하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상 투자등급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우므로 자금 조달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³⁾ 결국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각 사업화 단계에서 적절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연구개발(R&D) 완료 후 실증 및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산업구조가 부동산 중심의 유형자산에서 기술 중심 무형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 코로나 팬데믹 시

1) OECD, “Enquiries Into Intellectual Property’s Economic Impact”, OECD, 2015, p. 458.

2)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1, 7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 장애 요인 중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42.5%,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이 31.9%, 창업 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 경제활동(생계유지) 문제가 23.2% 순으로 나타난다.

3)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the IP Financial System”, APEC, 2023, p. 89.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으로 분류되는 AAA, AA, A, BBB 등급의 기업은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BB 등급 이하의 기업들은 IP 금융과 VC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Aran Ali, “The Soaring Value of Intangible Assets in the S&P 500”, VisualCapitalist,

기의 인터넷과 기술에 대한 극심한 의존, 백신 개발과 특허를 둘러싼 논의 등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⁵⁾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금의 성격과 규모, 자금 운용, 투자자 측면에 따라 다양하다. 지식재산을 금융의 목적으로 하는 IP 금융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IP 담보대출, IP 보증 대출, IP 투자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IP 금융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경제·사회 발전의 배경, 지식재산 인프라 성숙단계 및 목적 등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의해 IP 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민간·시장주도의 접근방식에 따라 IP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IP 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 수준이 높은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에 함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산업화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일지라도 통상적인 산업구조의 발전 과정을 뛰어넘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의지가 큰 국가들은 지식재산 인프라 기반이 성숙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IP 금융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soaring-value-of-intangible-assets-in-the-sp-500/>>, 검색일: 2023. 6. 27. 세계 경제 성장은 산업 기반이나 부동산 위주의 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또한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R&D,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터화된 정보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1970년에 1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전체자산의 90%에 달하며 유형자산의 가치는 10%에 그친다.

5)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IPO, 2020, pp.1-9. WIPO의 Global Innovation Index 2020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혁신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학적 성과, R&D 지출, IP 출원율, 벤처캐피탈을 통한 거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공중보건, 환경 보건, 산업 보건에 대한 투자는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바이러스 전파, 확산 방지 조치,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P 금융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합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각 방면의 시장 성숙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가진 내재적 위험성과 불안정성, 가치평가의 어려움, 융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거래 시장 조성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인 금융생태계 조성과 유기적인 운영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IP 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IP 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1. IP 금융 활성화의 어려움

IP 금융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은 다양한 측면에서 점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식재산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므로 수익성 및 장래의 자산적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고 권리화된 이후에도 침해의 위험과 기술 발전 등 외부 요인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식재산은 동일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비교를 기반으로 한 IP 가치평가 또한 매우 어렵다. 금융의 기능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선호 체계를 가진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는데, 지식재산은 시장의 변동, 경쟁 상황, 소비자 동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재적 불안정성을 가지므로 경제주체 간 원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IP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상반된 입장 또한 IP 금융의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은 여신 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식재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권리 자체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보물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처분한 때에도 대출 당시 평가 가치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이 보수적 성향의 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에 비해 높은 IP 가치평가 비용과 기간의 부담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공통적 어려움에 더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자산으로 수익화하기 위한 전략의 부재, IP 금융 모델 운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의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인프라 발전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IP 금융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국은 Business Collateral Act 2015를 제정하고, IP Advisory Center(IPAC)의 설립, 기술혁신지원센터(TISC)의 네트워크화 및 지식재산에 관한 리얼리티쇼를

개발, 방영하는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기술이전법, 민법, 과학기술법, 기업법 등에 IP 금융 관련 규정을 두고 IP 가치평가와 IP 금융 관련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IP 가치평가 기준(No.13)을 제시하였으나 개념적 수준에 그쳐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⁶⁾ 필리핀은 법률상 지식재산이 담보의 목적물로 승인되나 금융기관에서의 승인이 미비하고 IP 가치평가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전문적 IP 가치평가사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만은 중소기업의 IP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시스템을 개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산업 기술연구소(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로부터 발급받은 IP 가치평가서와 추천서를 기초로 중소기업 보증 펀드(Small

6)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Ibid. p. 38.

and Medium Enterprise Credit Guarantee Fund)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⁷⁾ 페루는 IP 담보를 위한 Legislative Decree 1400(Movable Collateral Law 2018)을 입법하였으나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담보로 활용할 IP 가치평가나 IP 금융 모델 미비로 실제로 IP 담보대출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는 지식재산, 특히 상표를 무형자산의 일부로 담보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법제도를 완비하였으나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거래하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2021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원으로 IP 금융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⁸⁾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

우리나라는 양질의 특허 출원량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정부의 혁신 금융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 힘입어 공격적인 IP 금융 활성화 정책, 특히 IP 보증 및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는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IP 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개도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발전과 국내외 협력관계 강화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단계별 구축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설계는 국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안 파악,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요 분석 및 단계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유익하다. 나아가, IP 금융 분야 국제개발 협력 시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에 따라 협력국의 IP 금융 인프라 성숙 정도를 분석하여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P 금융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권 설

7)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Ibid. pp. 33-35.

8)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Ibid. p. 32.

정의 목적물로 지식재산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변동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회계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및 금융보고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되어야 하며 IP 가치평가 기법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의 목적물인 지식재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IP 금융 모델을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특이성으로 인한 활성화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는 IP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경감을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현황

1. IP 담보 설정을 위한 법적 근거

(1) 한국

전통적으로 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뉘는데,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정되며 유치권은 물건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는 질권에 의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때 우선변제 받을 권리로서 목적물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⁹⁾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질권은 목적물인 권리의 성격상 인도나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인도를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고 질권설정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의 경우 계약과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한다.¹⁰⁾ 채권

9) 민법 제329조, 제345조.

10) 민법 제345조~제347조; 특허법 제101조.

자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질권을 가지나 지식재산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질권자는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¹¹⁾ 실무상 관행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양수인인 채권자에게 이전하나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인인 채무자가 지식재산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식재산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 구별된다. 주로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지식재산을 목적으로 한 자금조달방법의 근거가 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불확정 권리이므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가 지식재산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¹²⁾ 또한, 양도담보는 라이선스의 권리 기반을 약화시켜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제정된(2012년 시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민법상 질권과 요건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 담보권을 신설하고 지식재산담보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이 담보물권의 목적물로 채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특허법은 특허권, 전용 실시권,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¹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 담보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미국과 달리 담보권 등록이 단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11) 특허법 제121조.

12) 佐藤 育己, “知的財産担保法制, 西部部会ミニ・シンポジウム報告(3)”, 『国際商取引学会年報』, Vol.18(2016), p. 139.

13) 특허법 제101조, 제121조.

1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은 담보 거래로서 계약법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의 일반적인 무형 자산의 담보 거래에 관해 규정에 따른다. UCC 제9편은 개인 자산의 담보 거래에 관하여 담보 거래의 유효성 및 담보권의 설정, 완전성과 우선권, 제3자의 권리, 등록절차,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집행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¹⁵⁾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 담보거래가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전성(perfection)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채권자는 통일상법전에 따라 담보권 설정에 관한 UCC-1 금융문서(financing statements)를 각 주의 지정된 사무소, 일반적으로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¹⁶⁾ UCC는 일종의 모델법으로 각 주는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주법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보 거래에 관한 금융 문서 등록의 완전성 요건 또한 각 주법률에 따른다.¹⁷⁾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의 최고법 규정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인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주법인 UCC에 우선한다.¹⁸⁾ 미국 특허법과 상표법은 권리자가 특허상표청(U.S. Patent Trademark Office, USPTO)에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권 설정 등록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UCC-1 금융문서를 등록함으로써 완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¹⁹⁾ 다만 저작권의 경우 연방 저작권법은 담보권을 포함

15)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9-203조.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특허 담보 양도 및 질권설정 계약으로 생성되며 계약서에는 담보 설정의 의도와 담보물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담보물에 대해 적절한 권리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대가로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16)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9-502조.

17) Alicia Griffin Mills, "Perfecting Security Interests in IP: Avoiding the TRAPs", *The Banking Law Journal*, No.9(2008), p. 748.

18) 미국 연방헌법 제6조 2항.

19) Richard M. Assmus et al., "Value and Risk Considerations for Intellectual

한 등록 저작권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담보권자는 등록 저작권의 담보권에 관한 문서를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저작권의 경우에만 주 UCC 따른 UCC-1 금융문서 등록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담보권 설정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허와 상표의 경우 연방법상 담보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 UCC 규정에 따라 UCC-1 금융문서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저작권의 경우 연방 저작권법의 우월적 효력에 따라 등록 저작권의 담보권자는 저작권청에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저작권의 경우 주 UCC에 따른 UCC-1 금융문서 등록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관련 법과 주 UCC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은 UCC에 따른 등록은 특허권의 담보권 설정에 대한 대항요건은 될 것이나 연방 특허법에 따른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취득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⁰⁾ 따라서, 실무적으로 특허와 상표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자는 UCC-1 금융문서 등록과 함께 USPTO에 권리 변동에 대해 등록하며, 등록 저작권의 담보권 설정 또한 UCC-1 금융문서를 등록하여 이중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관행이다.

(3) 아세안 회원국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지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과 아세안 역내 교역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정부의 아세안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IP 가치평가와 IP 금융에 대한 회원국 및 아세안 사무국의 협력의지가 높다.²¹⁾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상 지식재

Property Collateral”, *Landslide*, Vol.14 No.4(2022), ABA,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publications/landslide/2021-22/june-july/value-and-risk-considerations-intellectual-property-collateral/> 검색일: 2023. 9. 21.

20) *Rhone-Poulence Agro, S.A. v. DeKalb Generics Corp.*, 284 F.3d 1323 (Fed. Cir. 2002).

21)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2018/19년과 2020/21년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사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자

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5년, 태국 비즈니스 담보법(Business Collateral Act B.E. 2558)이 제정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해졌다.²²⁾ 동법에 따라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은 사업담보등록사무소(Business Security Registration Office)를 설치하고 비즈니스 담보 계약의 등록, 담보권 설정의 통지, 담보 계약 철회 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²³⁾ 태국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은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서 이루어지나 담보권 설정 및 라이선스 계약 등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에 의해 이루어진다. 담보권 설정의 등록의무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태국 파산법상 담보권자로 인정되어 무담보채권자에 앞서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²⁴⁾ 채무자인 지식재산권자는 담보권 설정 이후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이전 없이 점유, 활용, 교환, 처분 새로운 담보권 설정, 이를 활용한 상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다.²⁵⁾

인도네시아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지식재산이 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령이 부재하였다. 2022년 7월 제정된 창조경제법(Creative Economy Law) 시행령(Government Regulation No. 24 of 2022)은 정부가 은행 및 금융기관과 창조경제 관련 기업을 IP 금융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창조경제법에 따라 IP 금융을 신청하는 개인,

문사업을 추진하였다(ASEAN 사무국, “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방안”, KSP, <<https://www.ksp.go.kr/pageView/info/664>>, 검색일: 2023. 8. 20; ASEAN 사무국, “IP Valuation Best Practices for ASEAN Member States”, KSP, <<https://www.ksp.go.kr/english/pageView/info-eng/849>>, 검색일: 2023. 8. 20.).

22) Thailand Business Collateral Act B.E. 2558 Section 8.

23) Thailand Business Collateral Act Section 14.

24) Thailand Business Collateral Act, Section 17; Ploynapa Julagasigorn, “Business Collateral Act: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Tilleke & Gibbins, <<https://www.tilleke.com/insights/business-collateral-act-financing-intellectual-property-assets/>>, 검색일: 2023. 6. 30.

25) Thailand Business Collateral Act Section 22.

26) Indonesia Creative Economy Law Article 4.

기업 또는 법인은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창조경제 관련 비즈니스 운영, 지식재산 거래 관련 계약서 및 금융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²⁷⁾ 창조경제법 시행령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가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의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담보목적물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적 정보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²⁸⁾

베트남은 민법, 지식재산권법, 기술이전법이 IP 금융의 근거가 된다. 민법 시행령은 지식재산으로 창출된 금전적 가치가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⁹⁾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금융, 세제와 신용 지원을 통해 혁신과 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거래 및 사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IP 금융 지원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³⁰⁾ 또한, 기술이전법은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의 결과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권을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규정하고,³¹⁾ 기술이전법 시행령에서 지식재산권이 혁신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담보대출의 목적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IP 금융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IP 가치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IP 금융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 IP 가치평가 법제 현황

27) Indonesia Creative Economy Law Article 7.

28) SSEK Law Firm, “New Regulation in Indonesia Focuses on IP Financing”,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3801295-e4be-428e-9b49-ab992b7b04cc>>, 검색일: 2023. 6. 30.

29) Decree 21/2021/ND-CP, Article 17.

30)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Act Article 8.

31) Vietnam Law on Technology Transfer Article 35.

32) Decree 76/2018/ND-CP Article 11.

(1) 한국

IP 가치평가는 IP 금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IP 금융 또는 지식재산 담보 거래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P 금융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IP 금융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IP 가치평가 인프라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의 IP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은 정부주도로 공공 부문에서 시작되어 민간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IP 가치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기술평가/기술거래 기관, 기술평가/거래 시스템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왔다.³³⁾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보증기금법, 발명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기술의 현물출자 감정(평가), 목적에 따른 기술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을 위한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³⁴⁾ 기술이전법은 기술평가기관의 요건으로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확보, 관리조직 구성, 기술평가모델 보유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을 명시하였다.³⁵⁾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여 기술거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³⁶⁾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³⁷⁾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³⁸⁾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 중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규

33)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21면.

34) 박재영, 상계보고서, 28면.

35)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36) 기술이전법 제10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박재영, 전계보고서, 32면.

37)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38) 발명진흥법 제40조의 7.

정하였다.³⁹⁾ 발명진흥법에 따라 현재 공공 및 민간의 총 23개의 기관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다.⁴⁰⁾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보증서 발급을 통한 보증 대출, 투자기관 투자의 기반이 된다. 그밖에 IP 거래, 사업화, 현물출자, 협상 또는 M&A 지원을 위한 가치평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활용된다.⁴¹⁾ 이와 함께 특허 정보를 분석한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허 분석 평가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 대량의 특허를 저비용/실시간으로 분석 및 질적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⁴²⁾

정부 주도의 IP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률에 따른 기술의 현물출자와 기술 및 IP 가치평가에 관한 규제는 가치평가 관련 법령 간 충돌 소지로 인한 전문가 활동의 제약,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 기관에 대한 형식적 관리로 인한 가치평가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 콘텐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치평가 기반 확충 및 IP 가치평가 중복 수행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내포한다.⁴³⁾

(2) 미국

한국의 정부 주도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방향과 달리 미국은 민간 부문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IP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회계사, 경제학자, 변호사, 라이선싱 전문가, 지식재산 컨설턴트,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 가치평가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로펌들이 목적과 분야에 따라

39) 발명진흥법 제28조.

40) 박경일, 「기술·발명의 ‘평가기관’, 활성화되나?..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 IPDaily, 2023. 2. 6자.

41) 박경일, 상계기사.

42)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SMART 3 브로슈어. 주요 특허 분석 평가시스템으로 한국발명진흥회 ‘SMART5’, 특허정보진흥센터의 ‘K-PEG’, 기술보증기금의 ‘KPAS’, 키워드 ‘KeyValue’ 등 4개 특허가치평가시스템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43) 박재영, 전계보고서, 12면.

IP 가치평가를 수행한다.⁴⁴⁾ 이들은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시험을 거쳐 전문자격을 취득하며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한다. 가치평가 관련 자격의 예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ABV 자격증, 미국 감정평가사협회의 ASA 자격증, 미국기업감정평가사협회의 CBA 자격증, 미국 공인감정평가사 및 분석가협회의 CVA 자격증 등이 있다.⁴⁵⁾ IP 가치평가는 전문자격을 갖춘 개별 가치평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분야별로 복수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적,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는데 협력하고 반대 의견 검토(contrarian review)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가치평가 보고서의 품질을 관리한다.⁴⁶⁾

(3) 아세안 회원국

IP 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IP 가치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IP 가치평가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IP 가치평가의 표준이 되는 IP 가치평가 모델 개발, 지식재산 거래 시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⁷⁾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IP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IP 금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3년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 주도로 IP 가치평가 훈련 모듈을 개발하였고, 가치평가 교육, 시험 및 실질적인 가치평가 훈련을 통해 IP 가치평가사 자격을 부여해왔다.⁴⁸⁾ 또한, 표준화된 IP 가치평가 모델(IP Valuation Model, IPVM)을 개발·보급하고, 지식재산권

44) L. M. Brownlee, *Intellectual Property Due Diligence in Corporate Transactions: Investment,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homson West, 2023, § 12:15.

45) L. M. Brownlee, *Ibid.*

46) L. M. Brownlee, *Ibid.*

47) 박유선,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 제 11권 제2호(2021), 50면.

48) MyIP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Modern IP: The Role of the IP Office”, International IP cooperation, <https://internationalipcooperation.eu/sites/default/files/arise-docs/2021/ARISEplusIPR_oct2021_Mohamed-Ikhwan-bin-Shahdzul-Bakri_Creating-an-Environment-for-Modern-IP-The-Role-of-the-IP-Office.pdf>, 검색일: 2023. 6. 30.

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과 투자자 간 지식재산 판매와 라이선스 등의 거래를 연결하기 위한 IPR Marketplace Portal을 운영하고 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0년 제정된 기술이전법에 따라 IP 가치평가, 사업화 및 정보공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IP 가치평가의 실무 지침으로서 IP 가치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⁴⁹⁾ 또한,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온라인 IP 거래 플랫폼으로 IP Depot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IP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이 초기 단계로서 IP 가치평가사 및 IP 거래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이나 2022년 창조경제법 제정으로 I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IP 금융 모델 운용 현황

(1) IP 금융 형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과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로 분류된다.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은 약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은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차입금에 의한 조달과 기업이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나뉜다.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기업의 부실 발생 시 금융기관이 담보 지식재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금융기법이다.⁵⁰⁾ 이는 기업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⁵¹⁾

IP 보증 대출은 IP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식재

49) 박유선, 전계논문, 52~53면.

50) 김현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청, 2020, 9면.

51) 이준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특허청, 2018, 11면.

산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 기업 부실 발생 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 지식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기법이다.⁵²⁾

IP 유동화(IP-backed Securitization)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수입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기업은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고 특수목적기구는 집합화(pooling)한 대상 자산을 기초로 증권/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⁵³⁾

IP Sales and Lease Back(IP S&LB)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이나 전문리스회사 또는 펀드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양도한 지식재산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하면서 계약 종료 시 지식재산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 금융기법이다.⁵⁴⁾ IP S&LB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고 채무이행 후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진다.⁵⁵⁾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은 주식을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은 크나 매출이나 담보가 없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자금 투자의 반대급부로 스타트업의

52) 김현아, 전계서, 9면.

5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과 경영』, 3월호(2014), 24면.

54) “IP Monetization - ‘Sale AND Leaseback’ Option”, Intricate Research, <<https://www.intracateresearch.com/post/ip-monetization-sale-and-leaseback-option#:~:text=In%20sale%20and%20leaseback%2C%20the%20IP%20owner%20transfers,of%20fees%2C%20which%20correspond%20to%20the%20loan%20interest.>>, 검색일: 2023. 6. 30.

55) 최 철 외 3인, 『지식재산금융 - IP비즈니스와 금융의 결합: 구조와 실제』, 지식재산연구총서 4, 신론사, 2019, 41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을 취득하며,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이 성장한 후 기업공개(IPO)나 M&A를 하여 취득한 주식을 공개하여 가치가 극대화되었을 때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한다.⁵⁶⁾

(2) 한국

국내 IP 금융 도입은 1990년대 중·후반 우수 중소기업의 대출 시 기술력 심사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나 물적 담보 없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IP 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활성화 노력이 있었으나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의 부재,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높은 부실률, 가치평가 모델 부재, 그리고 국내 특허권의 낮은 품질로 인한 담보력 부재 등으로 인해 IP 금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⁵⁷⁾ 2013년 특허청과 산업은행 간 MOU 체결, 주요 시중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참여, IP 유동화에 따라 기술금융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금융방식으로서의 IP 금융 개념이 정착되었다.⁵⁸⁾ 2018년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 IP 담보대출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⁵⁹⁾ 정부는 2020년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IP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국내 IP 금융 규모는 크게 성장하여 7조 원을 상회하였다. 누적 규모로는 IP 보증의 규모가 가장 크며 IP 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IP 투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⁶⁰⁾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56) Sam 3, “벤처캐피탈의 투자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 인수계약(SAFE)”, 변계사 Sam의 테크 스타트업!, (<https://better-together.tistory.com/211>), 검색일: 2023. 6. 30.

57) 김현아, 전계서, 22면.

58) 이지인,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1, 1면.

59) 김현아, 전계서, 23면.

60) 박경일, 「국내 IP 금융 잔액, ‘7.7조원’ 돌파… ‘3조’원 신규 공급(22년)」, IPDaily, 2023. 4. 28자. 2022년 기준 IP 투자액은 누적 3조 6,575억 원, IP 담보대출액이 2조 1,929억 원, IP 투자액이 1조 9,331억 원으로 나타난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IP 금융이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IP 금융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여전히 여러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설정한 지식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IP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높은 회수 리스크는 은행과 같은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IP 금융을 꺼리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특허청은 2020년 2월,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여 은행이 보유한 담보 IP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⁶¹⁾ IP 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의 부실 발생 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맡는다.⁶²⁾ IP 회수지원기구의 전문기관과 전담기관은 회수지원 여부, 손실보전을 결정을 위한 가치평가 검토, 담보 IP의 매입 및 활용, 거래 등의 수행하여 금융기관의 회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수 시 담보 IP의 가치는 담보대출 시 가치평가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일 수밖에 없다. IP 가치평가가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재산은 시장 내·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실 발생 시 더욱 그러하므로 평가된 IP 담보가치는 시장에서의 처분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IP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IP 매각이나 라이선싱이 용이하지 않아 매각금 또는 로열티 수익으로 회수 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담보 IP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미국

61) 이성용, 「IP금융·IP담보회수지원 공공-민간 협력해 추진」, 특허뉴스, 2023. 4. 21자.

62) 정순영,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부실 발생시 최대 50% 매입 손실 보전」, SEN 서울경제TV, 2020. 2. 18자.

세계 최초의 IP 담보대출은 1880년대 말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백열전구 발명에 대한 특허를 GE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민간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IP 금융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⁶³⁾

IP 담보대출이 IP 금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어느 국가보다 IP 유동화 모델의 활용이 다각화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IP 유동화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R&D)부터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특수목적기구(SPV)에 지식재산권 또는 로열티 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됨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원기업의 신용과는 분리된, 유동화 자산의 신용도에 근거한 증권발행 및 수입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파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⁶⁴⁾ 또한, 기업은 IP 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 없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⁶⁵⁾

최초의 IP 유동화로 알려진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예와 같이, IP 유동화 도입 초기에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어 주라기 공원 2,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매트릭스, 인디펜던스 데이 등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이후 IP 유동화는 음악, 영화 저작권 중심에서 제약·의약 특허와 상표로 확대되고 있다. 제약·의약 특허는 다른 기술에 비해 복제나 모방 등에 의한 기술 확산에 이르는 시간이 길므로 일정 기간 권리확보가 가능하며 단일 특허로 단일 제품 생산이 가능하므로 IP 유동화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⁶⁶⁾ 이상의 장점과 특허 라이선스 규모의 비약적 성장으로 미국의 IP 유동

63) 김현아, 전계서, 15면.

64) 최철외 3인, 전계서, 41면.

65) Naina Khanna, "The Securitization of IP Assets: Issu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23(2018), p. 99.

66) 손수정, "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 연구", 『정책연구』,

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특별목적기구(SPV)의 IP 포트폴리오를 세밀히 검토하고 모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투자 결정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다.⁶⁷⁾

IV.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1. IP 담보 설정을 위한 법적 근거

IP 금융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식재산이 법률상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면 지식재산이 담보 거래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가 채무의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처분하여 대출금과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IP 담보대출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성숙하지 않은 개도국에서도 지식재산 담보 거래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생성, 완전성, 우선권 그리고 집행에 관해 규정한다. IP 담보 거래에 대한 법적 장치는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는 경우, 담보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양 법에 모두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⁶⁸⁾ 여러 법률에서 IP 담보 거래에 관해 규정하

2007-01(2007), 98면.

67) William J. Kramer et al., "Securitis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 the US market",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https://ipo.org/wp-content/uploads/2013/04/Securitisation_of_IP_in_the_US.pdf>, 검색일: 2023. 6. 30.

68) Eva-Maria Kieninger et al,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dit Eva-Maria Kieninger, Springer, 2020, p. 11.

는 경우 법 규정이 상이하거나 충돌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⁹⁾ 특히, 담보권 설정 우선순위와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유 등록원부에 담보권 설정을 등록하도록 하여 공시를 단일화하는 방법, 양 법이 병존할 경우 고유 등록원부상의 등록이 타법에 따른 담보권 설정 등록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 지식재산권 등록원부를 대신한다고 보아 담보권 설정의 대항요건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⁷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되는 경우 담보권자 간 우선순위의 판단과 제3자의 거래 보호를 위해 담보권 설정의 공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과 IP 담보 거래의 대항요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담보권 설정의 절차, 대항요건, 공시 및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권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회계 처리의 현실화

종래의 지식재산의 가치는 회계 처리상 기업의 무형자산과 분리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ng Reporting Standards) 제38호(IAS 38)에서 외부에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지식재산은 신용 등과 별개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도록 규정하였다.⁷¹⁾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가치가 반영되는 지식재산은 외부에서 취득한 지식재산에 한하며 기업 내부에서

69) Dashpuntsag Erdenechimeg,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s Collateral: A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a Mongolian Perspective”, Universita Degli Studi Di Torino, WIPO, 2016.

70) 佐藤 育己, Ibid. p. 144.

71) A. Damodaran, “IP and Finance: Accounting and Valuation of IP Assets and IP Based Financing”, WIPO, <https://www.wipo.int/edocs/mdocs/sme/en/wipo_smes_dub_14/wipo_smes_dub_14_t8.pdf>, 검색일: 2023. 6. 30.

창출된 지식재산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는다.⁷²⁾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형식에 관한 수정을 제외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국제회계기준 제38호와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규정하면서,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한다.

기업회계기준서상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되며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이 연구단계에서 창출되었다면 연구 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며, 개발단계에서 창출되었다면 기준서가 정하는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⁷³⁾ 지식재산이 내부에서 창출되는 경우 경상적으로 지출된 개발비는 회계의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출원·등록 수수료, 변리사 비용 및 부대비용 등 지식재산 출원 비용으로 계상된다. 경상개발비 과목으로 당기 판매관리비에 계상되면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며, 비경상적이며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은 무형자산의 개발비 과목에 계상된다.

지식자산을 기업 외부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경우 최초의 가치는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이 취득원가로 측정되며, 이후 주기적으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재평가가 실시된다.⁷⁴⁾ 그 외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데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은 인정되지 않고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포함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는 기업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국내 및 국외 기업의 회계 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준용하여 투자자는 재

72) IAS 38 Intangible Assets.

7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74) IAS 38 Intangible Assets.

무상대표상에 표시된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과 경쟁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재무상태표에 기업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⁷⁵⁾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적절히 반영되고 평가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지라도 금융기관이 지식재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금융 리스크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IP 금융 활성화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3. IP 가치평가 인프라 강화

IP 가치평가가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IP 가치평가사 및 평가기관의 자격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IP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업종, 평가목적에 따라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으므로 IP 가치평가사를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 참여와 협업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정 IP 가치평가기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기관이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가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IP 가치평가 시 대상 지식재산 기반 기술의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시장가치보다 높은 등급이나 가액을 산정하는 관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 가치평가에 비해 IP 가치평가는 비용적인 면에서나 기간적인 면에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공공차원의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IP 가치평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유용하다.

IP 가치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술발전에 따른 IP 가치평가의 복잡

75) 임근호, 「증권가서 확산되는 '재무제표 한계론」, 한국경제, 2018. 9. 12자. 애플, 구글, 아마존, 텐센트 등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 6,400조 원에 순자산(장부가)이 1,350조 원으로 시총 대비 21%에 불과하고, Berkshire와 JP모간을 제외하면 13%로 더 낮으므로 투자자가 장부에 표시된 21%만을 기초로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단계를 단순화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IP 가치평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⁷⁶⁾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가치평가는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모델이 정형화된 형태로 가치평가를 수행하므로 IP 가치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특히 외부 영향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과장되는 투기적인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IP 가치평가의 경우 기본적인 평가요소들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평가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평가기관 간 경쟁 관계가 있을 경우 고객 유치 차원에서 기업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가치평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가치평가가 공공 부문에서 추진될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므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가능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경쟁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IP 가치평가 결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재검토한다면 IP 가치평가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IP 금융 모델의 다양화

국내 IP 금융은 IP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의 간접금융 위주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정부주도의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체 IP 금융 중 IP 투자와 같은 직접투자는 13%에 불과하며 IP의 자산적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⁷⁷⁾ 정부는 2020년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IP 펀드, IP 유동화 금융, IP 관

76) 양승민,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행정·평가시스템 AI 적극 도입””,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119000082>>, 2023. 1. 19.자 기사.

77) 이지언, 전계보고서, 39면.

런 소송 등 투자 및 사업화, IP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시도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기초자산으로 창출될 미래의 수입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IP 유동화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이 유동화 대상 지식재산의 가치 유지와 관리에 계속 관여할 수 있고,⁷⁸⁾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 상환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자산보유자의 파산이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⁷⁹⁾ 비용 절감, 규제로부터의 유연함 및 세제 혜택 등 여러 이점을 고려할 때 IP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 금융 담보목적물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의 결합체로 확장하여 다양한 IP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서,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침체에 있던 2020년,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담보로 은행 및 투자사로부터 50억 달러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해당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항공사가 은행이나 기업에 판매하여 항공사 수익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을 창출해 온 비즈니스 상품으로 은행이나 기업은 이를 고객 대상 리워드로 사용해왔다. IP 금융의 담보목적물에는 상표, “MileagePlus” 프로그램의 로고, 이름, 이미지를 포함한 브랜드, 마일리지 보상 관리, 보상 절차, 회원 계정 및 데이터 등에 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저작권과 특허 등이 포함되었다.⁸⁰⁾

5. 위험경감을 위한 제도 정비

IP 담보보호 보험(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 CPI)은 대출 기업의 채

78) 이영준, “지식재산금융에서의 판매 후 재실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고찰”,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2015, 19면.

79) 이영준, 상계논문, 19면.

80) Claire Bushey, “United Airlines pledges mileage programme to secure loan”,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f27c47dd-6d68-4e24-90dd-a997050d3d32>>, 2020. 6. 16.자 기사.

무 불이행 시 담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가 채무자인 기업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 배상하는 보험으로 미국에서 발전하였다.⁸¹⁾ 일반적인 담보보호 보험은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나 차량 대출 구매 시 차입자의 모기지 미납이나 담보물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강제보험(force-placed insurance) 또는 대출자 부가 보험(lender placed insurance)이라고도 한다.⁸²⁾ IP 담보보호 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인 보증보험으로, 채무자인 기업에 보험료 납부가 강제되며 채무 불이행 또는 담보 IP의 가치 하락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대출 기관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IP 담보보호 보험의 예로, 농업 기술 기업인 Indigo Ag가 IP 담보대출 시 담보 IP의 가치 하락에 대한 IP 담보보호 보험을 Aon PLC로부터 구입한 예,⁸³⁾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된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처분 시 용자금액 대비 부족분을 보험사가 대출은행에 배상하는 보험 상품을 IPISC(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 Company)가 판매한 예 등이 있다.

IP 담보보호 보험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IP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회수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보전하고 회수지원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과 함께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가되므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분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 담보대출 가액에 IP 담보 보호 보험의 보험료가 반영되어 담보 가액이 증가할 것이므로 담보 IP 처분 가격과 대출 손실 금액 간 차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채무자

81) 임소진,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8면.

82) Wikipedia, “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llateral_protection_insurance>, 검색일: 2023. 8. 8.

83) Matthew Lerner, “Aon offering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INSURANCE, <<https://www.businessinsurance.com/article/20201006/NEWS06/912337035/Aon-offering-intellectual-property-insurance-coverage-Markel-Specialty>>, 검색일: 2023. 6. 30.

의 채무 미상환으로 보험사가 대출 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담보 IP에 대한 보험사의 권리행사 우선권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6.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이상에서 논의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발전 방향인 동시에 IP 금융 도입을 꾀하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지식재산 인프라가 발전 과정에 있고 IP 금융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우리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모델의 공유는 개도국 IP 금융 인프라 강화와 한국식 IP 금융 시스템 전파에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국제개발 협력 수요가 높은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IP 가치평가 전문기관 설치, 평가수수료 지원,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한 회수지원펀드 조성,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담보 지재권 매입, 지재권 관리회사를 통한 매입 지재권 수익화의 실행구조의 구축 협력은 아세안의 IP 금융 시스템 정착 지원과 한국식 IP 금융 모델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의 주요 협력국들은 지식재산권을 법률상 금융의 담보물로 인정하는 법적 조치를 마쳤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인식과 IP 금융의 대상이 될 만한 강한 지식재산의 부재, IP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IP 금융 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IP 창출, 가치평가,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IP 금융을 위한 법·제도의 완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IP 가치평가, 합리적인 회계

처리, 금융상품의 다양화, IP 거래시장 활성화, 회수 지식재산 처분을 위한 플랫폼 구축,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수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IP 금융이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으로, IP 금융생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IP 회수지원 기구 설립 등의 정책적 노력은 기업 채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채권 회수의 위험을 정부가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IP 금융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최종적으로 IP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IP 금융 인프라의 각 요소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단계별 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에 따른 체계적인 활성화 노력과 시도는 IP 금융 도입의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IP 활용을 지원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최 철, 배동석, 손수정, 장원준, 『지식재산금융 - IP비즈니스와 금융의 결합: 구조와 실제』, 지식재산연구총서 4, 신론사, 2019.

〈단행본(서양)〉

Eva-Maria Kieninger et al,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dit Eva-Maria Kieninger, Springer, 2020.

L. M. Brownlee, *Intellectual Property Due Diligence in Corporate Transactions: Investment,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 Thomson West, 2023.

〈학술지(국내 및 동양)〉

박유선,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 제11권 제2호(2021).

손수정, “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 연구”, 『정책연구』, 2007-01(200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과 경영』, 3월호(2014).

佐藤 育己, “知的財産担保法制, 西部部会ミニ・シンポジウム報告(3)”, 『国際商取引学会年報』, Vol.18(2016).

〈학술지(서양)〉

Alicia Griffin Mills, “Perfecting Security Interests in IP Avoiding the TRAPs”, *The Banking Law Journal*, No.9(2008).

Naina Khanna, “The Securitization of IP Assets: Issu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23(2018).

Richard M. Assmus et al., “Value and Risk Consider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andslide*, Vol.14 No.4(2022), ABA,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publications/landslide/2021-22/june-july/value-and-risk-considerations-intellectual-property-collateral/> 검색일: 2023. 9. 21.

〈학위논문(국내 및 동양)〉

이영준, “지식재산금융에서의 판매 후 재실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고찰”,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2015.

〈인터넷 자료(국내 및 동양)〉

박경일, 「기술·발명의 ‘평가기관’, 활성화되나?..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 IPDaily, 2023. 2. 6자.

박경일, 「국내 IP 금융 잔액, ‘7.7조원’ 돌파… ‘3조’원 신규 공급(’22년)」, IPDaily, 2023. 4. 28자.

이성용, 「IP금융·IP담보회수지원 공공-민간 협력해 추진», 특허뉴스, 2023. 4. 21자.

임근호, 「증권가서 확산되는 ‘재무제표 한계론」, 한국경제, 2018. 9. 12자.

정순영,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부실 발생시 최대 50% 매입 손실 보전」, SEN 서울경제TV, 2020. 2. 18자.

ASEAN 사무국, “IP Valuation Best Practices for ASEAN Member States”, KSP, <<https://www.ksp.go.kr/english/pageView/info-eng/849>>, 검색일: 2023. 8. 20.

ASEAN 사무국, “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방안”, KSP, <<https://www.ksp.go.kr/pageView/info/664>>, 검색일: 2023. 8. 20.

Sam 3, “벤처캐피탈의 투자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변계사 Sam의 테크 스타트업!, <<https://better-together.tistory.com/211>>, 검색일: 2023. 6. 30.

〈인터넷 자료(서양)〉

A. Damodaran, “IP and Finance: Accounting and Valuation of IP Assets and IP Based Financing”, WIPO, <https://www.wipo.int/edocs/mdocs/sme/en/wipo_smes_dub_14/wipo_smes_dub_14_t8.pdf>, 검색일: 2023. 6. 30.

Aran Ali, “The Soaring Value of Intangible Assets in the S&P 500”, Visual Capitalist,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soaring-value-of-intangible-assets-in-the-sp-500/>>, 검색일: 2023. 6. 27.

Claire Bushey, “United Airlines pledges mileage programme to secure loan”,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f27c47dd-6d68-4e24-90dd-a997050d3d32>>, 2020. 6. 16.자 기사.

Matthew Lerner, “Aon offering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INSURANCE,

<https://www.businessinsurance.com/article/20201006/NEWS06/912337035/Aon-offering-intellectual-property-insurance-coverage-Market-Specialty>, 검색일: 2023. 6. 30.

MyIP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Modern IP: The Role of the IP Office”, International IP cooperation, https://internationalipcooperation.eu/sites/default/files/arise-docs/2021/ARISEplusIPR_oct2021_Mohamed-Ikhwan-bin-Shahdzul-Bakri_Creating-an-Environment-for-Modern-IP-The-Role-of-the-IP-Office.pdf, 검색일: 2023. 6. 30.

Ploynapa Julagasigorn, “Business Collateral Act: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Tilleke & Gibbins, <https://www.tilleke.com/insights/business-collateral-act-financing-intellectual-property-assets/>, 검색일: 2023. 6. 30.

SSEK Law Firm, “New Regulation in Indonesia Focuses on IP Financing”,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3801295-e4be-428e-9b49-ab992b7b04cc>, 검색일: 2023. 6. 30.

William J. Kramer et al., “Securitis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 the US market”,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https://ipo.org/wp-content/uploads/2013/04/Securitisation_of_IP_in_the_US.pdf, 검색일: 2023. 6. 30.

Wikipedia, “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llateral_protection_insurance, 검색일: 2023. 8. 8.

Intricate Research, “IP Monetization - ‘Sale AND Leaseback’ Option”, Intricate Research, <https://www.intricate-research.com/post/ip-monetization-sale-and-leaseback-option#:~:text=In%20sale%20and%20leaseback%2C%20the%20IP%20owner%20transfers,of%20fees%2C%20which%20correspond%20to%20the%20loan%20interest.>, 검색일: 2023. 6. 30.

〈연구보고서(국내 및 동양)〉

김현아,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청, 2020.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이준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특허청, 2018.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1.

〈연구보고서(서양)〉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the IP Financial System”, APEC, 2023.

Dashpuntsag Erdenechimeg,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s Collateral: A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a Mongolian Perspective”, Universita Degli Studi Di Torin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6.

OECD, “Enquiries Into Intellectual Property’s Economic Impact”, OECD, 2015.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IPO, 2020.

〈연구보고서(국내)〉

이지연,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수원, 2021.

임소진,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Infrastructure Framework in the IP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erspective

Park, Yusun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functions through a complex interplay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consensu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cohesive development of IP infrastructure, maturation of different market aspects, and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To activate IP finance in a systematic manner,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trong IP finance infrastructure. This entails creating a legal framework that recognizes IP as a viable asset for financial transactions, acknowledging it as the subject of security interests. In addition, implementing a transparent disclosure system is necessary to publicly communicate any changes in IP rights, while improvements in accounting practices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re essential for accurately reflecting the value of IP in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Furthermore, establishing a precise and reliable system for valuing IP is of utmost importance, necessitating ongoing advancements in IP valuation techniques. It is also vital to foster a thriving IP market by diversifying IP finance models and advancing financial methodologies. The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providing appropriate policy support to encourage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Ultimately, the framework for IP finance infrastructure should aim to create a harmonious financial ecosystem where IP finance operates seamlessly in the market.

Keywords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P finance infrastructure, IP-back financing, IP collateral loans, IP guarantees, IP investments, IP valuation, IP securitization